

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4. 25.(월)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나.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와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라. 입법예고 : 2022. 4. 14. ~ 4. 20. (7일간) / 의견제시 1명
- 마. 조례안 예고 의견 반영 여부 : 미반영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내용 (조항)	의 건	실무부서 의견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반영 여부
1. 제2조(정의)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보다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그 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대상이 예방 목적의 구강건강관리가 절실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였음.	미반영
2. 제5조(지원대상)	2. 현재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 있어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한 후 중복 지급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기도, 도교육청, 도치과의사회 업무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4학년생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구강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음.	미반영
3. 비용추계서	3. 해당 조례는 초등학생들에게 대해서 그 범위가 폭 넓은 범위로 지원하는 조례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초등학생 4학년만 지원하는 내용만 있고 초등학생과 같이 적용하는 아이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당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추계서입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중복 지원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내년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 교육청과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 적용 폭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상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음에도 비용추계서에는 4학년으로 지정했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기 영구치열기로서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효과가 높으며, 평생구강건강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예방사업 효과성이 높아 대상으로 선정함.	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의견 내용 및 반영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진료범위 및 의료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 제도는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7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 자체의 지원근거의 법제화는 타당하고 여겨지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교육 및 예방진료를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업대상 : 초등학생 4학년 8,030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검진비	운영비
321,200천원	16,0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비 40,000원/1인 40,000원×8,030명=321,200천원 (남양주 4,818명, 풍양 3,2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소모품 등 구입 ○ 협의체 운영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37	337	337	337	337	337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도비(70%)	236	236	236	236	236	236
	시비(30%)	101	101	101	101	101	101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 정 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당없음 (비수익사업)							
세 출		337,260	337,260	337,260	337,260	337,260	1,686,300
검진비		321,200	321,200	321,200	321,200	321,200	1,606,000
운영비		16,060	16,060	16,060	16,060	16,060	80,300
재원 조달		337,260	337,260	337,260	337,260	337,260	1,686,300
의존 재원	소 계	236,082	236,082	236,082	236,082	236,082	1,180,410
	보조금	236,082	236,082	236,082	236,082	236,082	1,180,41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1,178	101,178	101,178	101,178	101,178	505,890
	지방세	101,178	101,178	101,178	101,178	101,178	505,8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 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 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